제주특별자치도 4 · 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4. 2.] [조례 제1170호, 2014. 4. 2., 제정]

제주특별자치도(총무과), 064710644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념하기 위하여 지정된 '4·3희생자추념일'과 우리나라의 국치일 등에 국기를 조기 게양함으로써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깨닫고 민족정기를 드높이는 한편, 나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 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4·3희생자추념일"이란 「각종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정된 날(4월 3일)을 말한다.
3. "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의 권리를 빼앗겼던 날(8월 29일)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조기게양일)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법 제9조에 따른 국기의 조기 게양일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조기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3희생자추념일(매년 4월 3일)
2. 국치일(매년 8월 29일)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국기의 조기게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조기게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
2. 기타 도민 및 기관, 단체 등에 대한 조기게양 권고

부칙 <제0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